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40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	2

I. 개요

1.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보청기를 판매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제13조(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제3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 등----- -----.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 -----

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
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
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
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
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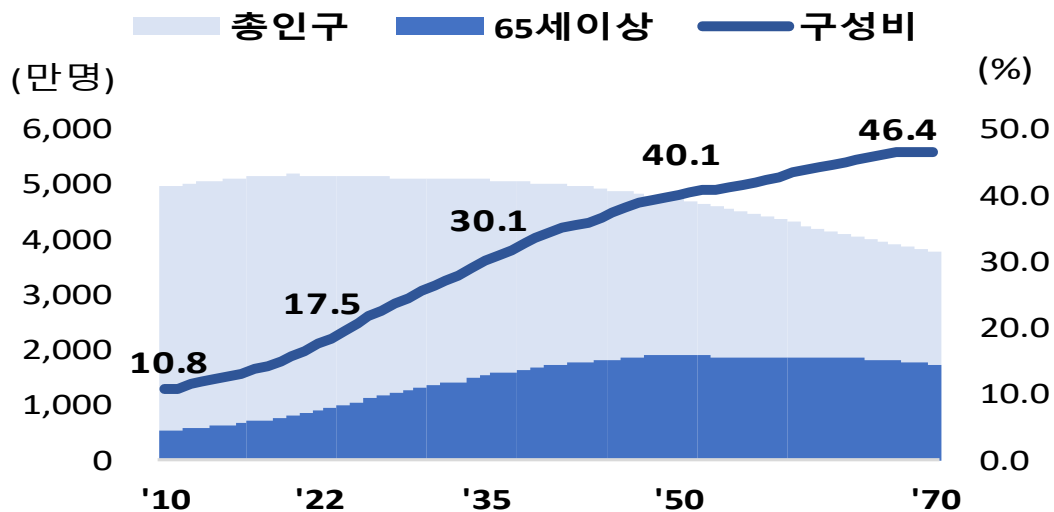
④ ~ ⑩ (생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u>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u> ②·③ (생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및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재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46만 2,270명으로 전체 인구(5,114만 5,884명) 중 약 18.5%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¹⁾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경도 및 중등도이상 난청 유병률은 84.6%로 나타났고, 이 중 중증도이상 난청 유병자의 청각보조기기(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사용률은 15.4%²⁾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2)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22)

< 65세 이상 난청 유병률 현황 >

(단위: %)

연도	경도			중증도			합계
	일측	양측	계	일측	양측	계	
2019-2020	27.3	22.6	49.9	15.8	23.6	39.4	89.3
2021	25.9	23.8	49.7	16.2	20.5	36.7	86.4
2022	24.9	23.4	48.3	13.5	22.7	36.3	84.6

* 경도: 순음청력평균치가 경도(26dB이상 41dB미만)인 분율
중증도이상: 순음청력평균치가 중증도이상(41dB이상)인 분율
순음청력평균치 : (500Hz+1000Hz+2000Hz+4000Hz)/4

** (모수) 경도: 2019-2020: 2,048명, 2021: 1,519, 2022: 1,368
중증도: 2019-2020: 876명, 2022: 672명, 2023: 626명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22)

□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포함하여 의지·보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등 87개 품목³⁾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음.⁴⁾

< 최근 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별 지급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분류	유형	2021년		2022년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692	26,665	33,125	25,946	35,126	26,580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등 8종	208	146	186	130	202	146
다리의지	골반의지 등 7종	1,154	2,487	1,078	2,418	1,152	2,616
팔보조기	어깨보조기 등 4종	230	39	182	32	190	36

3) 2024년 1월 기준

4)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척추보조기	목보조기 등 5종	267	90	174	56	194	71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10	1	9	1	4	0.6
다리보조기	무릎보조기 등 4종	2,169	907	1,977	804	2,045	768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신발	2,911	728	2,462	617	2,720	681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3,933	2,082	3,720	1,971	3,678	1,934
	지팡이	303	6	238	5	268	5
	목발	64	1	55	0.8	55	0.8
	의안	242	162	225	154	268	180
	저시력 보조안경	220	22	201	20	223	22
	콘택트렌즈	9	0.7	10	0.8	7	0.6
	돋보기	56	5	46	4	53	5
	망원경	1	0.1	3	0.2	1	0.1
	흰지팡이	155	4	97	2	118	3
	보청기	8,182	8,733	9,389	8,908	11,148	9,447
	개인용 음성 증폭기	21	11	11	6	14	7
	전동휠체어	1,419	2,955	1,628	3,398	1,274	2,682
	의료용스쿠터	3,007	5,016	2,662	4,439	2,814	4,873
	자세보조용구	309	414	276	378	316	428
	욕창예방방석	1,234	299	1,044	232	1,083	251
	욕창예방매트리스	799	307	604	209	613	213
	이동식전동리프트	529	1,020	483	914	523	1,009
	전·후방 보행차	60	6	64	6	51	6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2개1세트)	5,617	898	5,708	913	5,533	894
	의지 소모품 8종	583	325	593	327	579	301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보청기 지급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의료급여 보청기 지급 대상자 기준 >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즉,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그리고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거나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임.

<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1]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따라서, 순음청력평균치⁵⁾가 중증도(41dB 이상)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라 하더라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5) 순음 청력검사는 방음 시설이 된 장소에서 기기를 이용하여 한쪽 귀씩 500, 1000, 2000, 4000Hz 네 개의 주파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대표적인 청력측정 검사로, 낮은 dB로부터 높은 dB로 소리를 올리면서, 환자가 소리가 들린다고 신호하는 최초의 dB을 그 주파수에서의 청력 역치로 결정하며, 네 개의 주파수의 청력 역치 평균을 순음청력평균치라고 함.

- 한편, 노인성 난청의 경우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⁶⁾, 달팽이관 내 청각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청기의 조기 착용이 중요하다는 의견⁷⁾, 난청이 심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음⁸⁾.
-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성 난청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에서는 의료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¹¹⁾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

6)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노인성 난청”

7) “노인성 난청, 보청기 조기, 양이착용이 핵심”, 매일안전신문, 2024.10.24.
<https://idsn.co.kr/news/view/1065585513955659>

8) “난청 심하면 치매 위험 5배…보청기 착용해야”, 매일경제, 2024.2.27.
<https://www.mk.co.kr/news/it/10952130>

9) p.6 <최근 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별 지급 현황>의 보조기기 목록과 동일함.

10)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

2. 의료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재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203403)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둘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한 보조기기 교부·대여 등 지원 근거를 마련¹²⁾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¹³⁾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청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통한 보조기기 지원은 의료적 목적에서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급여로 결정된 품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1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목을 전문의 처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 보조를 목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최소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임.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목록 비교 >

구 분	의료급여 사업 지원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품목
지원품목 (상세)	1.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어깨관절의지, 위팔의지, 팔꿈치관절의지, 아래팔의지, 손목관절의지, 손의지, 손가락 의지 2. 다리의지 골반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발목의지, 발의지 3. 팔보조기 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손목-손 보조기, 손가락 보조기 4. 척추보조기 목 보조기, 등-허리 보조기, 허리-엉치 보조기, 등-허리-엉치 보조기, 허리 보조기 5. 골반보조기 6. 다리보조기 엉덩이-무릎-발목 발보조기, 무릎 보조기, 발목-발 보조기 7.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8.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현미경, 보청기, 개인용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 보행차 9.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무릎관절 의지 소켓, 발목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1. 욕창예방방석 2. 욕창예방매트리스 3. 음성유도장치 4. 음성시계 5. 신호장치 6. 진동시계 7. 보행차 8. 좌석형 보행차 9. 탁자형 보행차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1. 식사 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 접시 및 그릇 14. 음식 보호대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16. 헤드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문자판독기 19. 목욕의자 20. 녹음 및 재생장치 21. 경사로 22. 이동변기 23. 의류 및 신발 24.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25. 휠체어 액세서리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7. 환경제어장치 28. 대화용 장치 29. 지지대 및 손잡이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판 31. 장애인용 유모차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 33.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 34. 소변 수집 장치 35. 대체 입력 장치 36.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 알림기) 37. 독서용 탁자책상 및 독서대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청각 장애는 아니나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의 난청이 있는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활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 질환과의 형평성, 의료급여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